

[일련번호 : 5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결의 누락 및 기금 집행에 대한 지출결의서 미작성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수강료 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0조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·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자치회관의 수강료를 징수하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·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 2024. 2. 1. ~ 4. 19.일

까지 30건, 총 12,551,038원의 수강료를 징수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강료를 관리하였으며,

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통해 공공자금의 사용 목적과 집행과정을 명확히 하고 집행을 승인받아야 함에도 2024. 1. 5. ~ 4. 30.일까지 자치회관 기금을 43건 총 8,410,600원을 지출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자치회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기록·관리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수강료 부과·징수 및 기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